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실의 조직)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적에 맞는 의사, 의학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의학 분야를 연구하고, 의료인문학 교육을 개발하며 의과대학의 의료인문학 교육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문사회의학교실을 설치, 운영한다.

제3조 (구성) 인문사회의학교실에는 1인 이상의 전임교수를 두며, 1인 이상의 겸임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 ① 전임교수는 인문사회의학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전담한다.
- ② 겸임교수는 인문사회의학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겸임하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 ③ 조교는 인문사회의학교실의 행정 및 기술 업무를 수행하며, 조교는 의과대학 학생생활상담소 및 교목실의 행정 및 기술 업무 수행을 병행한다.

제4조 (기능) 인문사회의학교실은 인문사회의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년 8월 31일]

- ① 의료인문학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 ② 의료인문학과정의 개발, 실행 및 그에 대한 지원
- ③ 인문사회의학 분야의 연구 및 관련 제반 사업
- ④ 교육과정위원회 산하 의료인문학교육 소위원회 업무의 행정적 지원

제5조 (준용) 인문사회의학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신대학교 및 의과대학의 제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